

1999. 12. 2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건의문(안)】

충주시의회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따른견의문(안)

존경하는 ( ) 님!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고난 사로 얼룩진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의 무한국제경쟁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 ) 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 정책이 국가의 제일의 과제로서 서구사회에 버금가는 삶이 보장되는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 공평함과 투명성 의한 진정 인간다운 삶의 그늘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남아 있어서는 안될 우리 사회의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물 수급의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공급, 홍수 조절을 위한 장기 수자원관리계획에 의하여 전국에 많은 댐을 건설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정부의 치수관리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댐주변 지역 주민들은 국가개발정책의 회생 산물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주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1985년도에 준공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충주댐으로 인하여 이루형언 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충주시를 비롯한 3군 13면 114리라는 수많은 마을이  $6,648km^2$ 의 유역면적속에 수몰되면서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만수위 선 위에서의 고단한 삶이 연속되고 있음을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평생을 농사를 천직으로 알던 농부가 어부로, 낚시터 관리인으로 전락되고 성능 좋은 농기계는 선망의 꿈인 채 가파른 산비탈 농경지를 등짐에 의존하는 1960년대 농경시대의 고단한 삶과 함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감축운행과 잇따른 각급 학교 폐교로 인한 자녀들의 외지 교육비 부담 등으로 댐주변 주민들은 정부복지 시책과 물질 문명시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댐 주변 지역의 어려운 생활여건의 개선 사업비와 1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전을 위한 막대한 환경기초 시설설치 및 운영비는 열악한 지방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999년 9월 7일 제정 공포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입법 예고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은 댐건설로 인한 주변 피해주민들의 피해 반대급부의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 입법이어야 함에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어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전의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 댐건설에 의한 피해규모와 지원지역은 저수면적에 비례함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댐 주변지역 지원액의 30%(km<sup>2</sup> 당 지원금액)에 불과함으로 다목적 댐의 지원사업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댐과 발전 댐의 지원금비교(‘98년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댐 별	지원금	저수면적(km <sup>2</sup> )	km <sup>2</sup> 당지원금액	비 고
충주댐	260	97.4	2.7	다목적댐
춘천댐	187	14.3	13.1	발전댐
의암댐	266	15.0	17.7	"
청평댐	96	17.6	5.5	"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법 제44조제2항)

## 【현 행】

-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2
- 전전년도 생활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요금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 10이내

## 【개정건의안】

-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 5이내
- 전전년도 생활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용수 요금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둘째, 당해댐 출연금은 당해댐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해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전액 지원되어야 함에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55조의 지원금 산정배분, 기준은 댐의 유역면적이 적은(유역면적이 적을수록 피해도 적음) 다른 지역 댐까지 확대지원하는 지원금 산정배분은 극히 불합리한 모순임으로 당해댐 출연금 전액이 당해 지역에 지원, 배분될 수 있는 산정기준으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 ◦ 출연금에 의한 지원금 배정 불합리(2000년도 댐별 배정예상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충주댐	소양강댐	안동댐	대청댐	합천댐	주암댐	임하댐	부안댐
출연금 (A)	3,016	1,564	746	700	726	584	368	4
지원금 (B)	1,564	1,085	743	875	817	562	589	377
지원율 (B/A)	53	68	99	125	113	96	153	9,425

\* 수익금(출연금)이 적은 댐의 지원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에서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봄.

셋째, 충주 조정지 댐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46조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댐”에 해당됨에도 충주조정지댐 주변지역과 하류지역이 수해시 가장 큰 피해를 겪었고 조정지 댐 하류지역 5개면 18리  $28.8km^2$ 가 지난 ‘99년 10월 4일 수변 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개발제한을 크게 받고 있음에도 지원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입법 취지에 크게 맞지 않는 사항으로 충주 조정지 댐 주변지역이 지원대상 댐에 포함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단서조항 신설등)

####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시행령 제46조)

-저수면적 200만  $m^2$ 이상이거나 총저수량이 2,000만  $m^3$ 이상인 댐.

#### ○ 충주조정지댐의 제원

구 분	정상표고	만수위	길이	저수용량	저수면적	발전시설용량
제 원	70EL.M	65.1EL.M	480.7m	3.000만 $m^3$	670만 $m^3$	12천 kW

#### ○ 조정지 댐의 수해피해 현황

년도별	피 해 규 모	비 고
1990	가옥11동, 농경지 20.7ha, 비닐하우스 241동	조정지 댐 상류
1995	가옥42동, 농경지 618ha, 비닐하우스 65동	조정지 댐 상·하류

상기와 같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0년 3월 8일 시행)과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댐건설 주변지역 실정과 피해 주민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충주댐건설 이후 14년간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사항으로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2월 29일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